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245885 판결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34,258,348원 및 그중 33,212,46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9%의, 336,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2023.

7. 2.까지는 연 4%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08,945,096원 한도 내에서 가.항 기재 돈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7. 18.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83,803,920원에 취득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276,500원,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리스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23. 3. 29. 기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지급 리스료는 33,921,295원(그중 원금 33,212,460원), 가지급금은 337,053원(그중 원금 33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023. 3. 29. 기준 미지급 리스료 및 가지급금 합계 34,258,348원(= 리스료 33,921,295원 + 가지급금 337,053원) 및 그중 리스료 원금 33,212,46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급금 원금 336,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3.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인 2023. 7. 2.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상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4%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증한도액인 108,945,096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3. 2. 16. 3,080,000원, 2023. 4. 28.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종찬